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 선고 2017나6823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1 선고 2017나6823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9. 1 선고 2017가단500342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

피고, 항소인 1. A

2. D

3. B

변론 종결 2018. 4. 12.

판결 선고 2018. 5. 1.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9. 1. 선고 2017가단5003423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A은 92,712,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7. 19.부터 2015. 8. 31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피고 B, D는 피고 A,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2,712,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7. 19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,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)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행순

판사서경원

판사주진오